

1. 개정이유

소아청소년과 전공의(레지던트)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차진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며,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(안 제4조)
- 나.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내과, 외과,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”를 “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공동실시에 관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제4조제1항의 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련기간의 변경) ① 영 제 5조제2항에 따라 <u>내과, 외과, 결 핵과 및 예방의학과</u> 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.	제4조(수련기간의 변경) ① ---- ----- <u>내과, 외과, 소 아청소년과, 결핵과 및 예방의 학과</u>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전공의의 임용) ① ~ ⑥ (생 략)	제8조(전공의의 임용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기 시험 공동실시에 관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